게임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9136 제안연월일: 2025. 3.

번호 제 안 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발아제출일	심사경과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202392	이재정의원 등 12인	'24.7.3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11.19.)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226)	
	2205052	김윤덕의원 등 10인	'24.10.30.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0.)	
				소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박정하의원 등 12인	'24.12.23.	심사 상정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² 25.2.26.)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2206849			소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2.19.)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심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2.26.)	
	2206873	박정하의원 등 10인	'24.12.24.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2.19.)	
				소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226)	
	2206937	박정하의원 등 11인	'24.12.26.	심사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2.19.)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심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226.)	
	2207010	박정하의원 등 12인	'24.12.27.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2.19.)	
				소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심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226.)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3. 5.)는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21조의2제1 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을 통한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심사하도록 함(제24조의2제1항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피하고자 폐업신

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민 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 장함(안 제30조).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수정한"을 "수정하는"으로, "24시간"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6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

기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 2.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 ①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⑧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위원회가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로, "매출액"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21조제7항"을 각각 "제2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항"을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 기2 하며, 같은 항 제1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당해연도에는 자체등 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1조의10제3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제24조의3제2호 중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를 "현황과 근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시간"을 "20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것

제30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

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의2 중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4부터 제2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제3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의2에 따라 자제등급분류사업자 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5조(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정 등) ① (생 략)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10항----② 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 따 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 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생 |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현행 과 같음) 략)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 -----수정하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 후 24시<u>간</u>-----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 ----- <후다 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 삭제>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 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 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존 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 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 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정보d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 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 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 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 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 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로서 게임기기의 외관 변경 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 2.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 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임물
 -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 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

<신 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있다.

<u>⑦</u>・<u>⑧</u> (생 략)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
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
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지
는 위원회가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
<u>야 한다.</u>
<u>⑨</u> 제5항부터 제8항까지
<u>.</u>
<u>⑩·⑪</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u>1</u> 2

"등급분류기관"	이라 한다)의 등	-
급분류 결정이	<u>제7항</u> 의 등급분	_
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	
우 위원회는 즈]권으로 등급분	_
류를 할 수 있다	} .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 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 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 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 정할 수 있다.

- 1. (생략)
-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

 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

 의 적정성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제10항
지정) ①
1. (현행과 같음) <삭 제>
<u>\\\</u>
②
1
 가 <u>게임배급업,</u>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 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 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상일 것

나. • 다. (생 략)

- 2. ~ 5. (생략)
- ③ (생략)
-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 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 2. 저 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⑤ (생략)

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
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매출
<u> </u>
나.·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1 (청채고) 가오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⑤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 등의 준수사항) ① ------

- 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등급분류를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 2. ~ 4. (생 략)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 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 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 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 6. ~ 9. (생 략)
-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단서 신설>

 1. <u>제21조제10항</u>
 2. ~ 4. (현행과 같음) 5
<u>제5항부터 제8항까지</u>
 6. ~ 9. (현행과 같음)
10
다만, 재지정 신청

11. · 12. (생략)

- ②·③(생 략)
-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 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 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 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 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에 따 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 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 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생 략)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u>3년</u>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 1. ~ 5. (생 략)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

당해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
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1.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5년</u>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

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소화)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 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 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 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 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 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제21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수있다. <단서 신설>

소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1조제10항</u>
 ④ ~ ⑥ (현행과 같음)
세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다음
<u></u>
<u>다만, 청소년게임제공</u>
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
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
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
<u>무는 제외한다.</u>

- 1. (생략)
- 2. <u>제21조제5항</u>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대상 통보 및 조치
- 3. ~ 6.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 기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1의2. (생략)
 -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신 설>

1. (60) 60/
2.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
사항)
· 1.·1의2. (현행과 같음)
1. 1日2. (智智知 を日) 2
<u>현황과 근거</u> -
3
<u>2</u> 0시간
4.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
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

1 (혀해과 간은)

<u>4.</u> (생 략)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2 저 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 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신 설>

의록을 작성할 것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u>30일</u>
다만, 제35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
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
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
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
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

제41조(수수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u>제21조제5항</u>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 ③ (생 략)

제48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

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2	조(수수	=료)	1	(현	행과	같음	음)
2							

---.

- 1. ~ 4. (현행과 같음)
- 5. <u>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u>------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

-----.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21조제5항 및 제6항---

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신 설>

<u>2의3.</u> ~ <u>2의7.</u> (생 략)

3. ~ 8. (생략)

③ (생 략)

2의3.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수정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2의4.~ 2의8.(현행 제2호의3

부터 제2호의7까지와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